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9
----------	-------

제출년월일 : 2025.8.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기존의 일괄적인 안전물품 지원 방식을 개인별 맞춤형 안전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특성상 발병 위험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전물품 구입비 또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장(안 제10조제1항제7호)
- 나. 안전물품 구입비 또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안 제11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7. 3. ~ 7. 2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항 제7호”를 “제10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물품”을 “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한정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를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 소재”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권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u>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u></p> <p>8.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u>제10조 제1항 제7호</u>에 관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재해 예방을 위한 <u>물품</u> 지원</p> <p><u>&lt;신 설&gt;</u></p> <p>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u>자로 한정한다.</u></p> <p>1.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 로 <u>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자</u></p> <p>2. 마포직업소개소에 <u>구직등록한 자</u></p> <p>③ (생 략)</p>	<p>제10조(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u></p> <p>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① ----- <u>제10조제1항제7호</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u> ---</p> <p>3. <u>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비 지원</u></p> <p>② ----- ----- <u>사람으로 한다.</u></p> <p>1. ----- <u>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 소재</u> ----- <u>종사하는 사람</u></p> <p>2. ----- <u>사람</u></p> <p>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 보전
2.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 지원
3.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최주연
연 락 처	02-3153-8693